

동탄 그웬 160 (동탄2 B11BL)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51-0727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외국인 청약불가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최초 당첨자 발표일(2026.05.07.)부터 3년	3년	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4.16.(목)	2026.06.02.(화)	2026.06.08.(월)	2026.06.11.(목)	2026.06.12.(금)~ 2026.06.13.(토)	2026.06.15.(월)

1

공통 유의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 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잔여세대(무순위)	○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6.02.(화)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146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4.16.(목)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113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06.08.(월)	2026.06.11.(목)	2026.06.12.(금) ~ 2026.06.13.(토)	2026.06.15.(월)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동탄 그웬 160」 견본주택 (주소: 경기도 화성특례시 동탄구 영천동 863-5번지) ■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운영 시간 : 10:00 ~ 17:00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기도 화성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확인 내용

구분	기준일(~로부터)	기간	관계 법령
전매제한기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 발표일 (2026.05.07.)	3년 (단,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
거주의무기간	최초 입주 가능일	3년 (단,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3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함.)	「주택법」 제57조의2,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2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특례시 동탄2 택지개발지구 B11BL (신동 720)

■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 1층, 지상 4층, 9개동 총 160세대 중 잔여 78세대

■ 입주시기 : 2028년 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2026910146	01	102.7378	102	23	3741	101, 102, 103, 104
					3742	101, 102, 103
					3743	101, 102, 103, 104, 105
					3744	101, 103, 104
					3745	105, 106
					3746	101, 102
					3748	101, 102, 103
					3749	101
	02	102.7378P	102P	24	3741	401, 402
					3742	401, 402, 403, 404
					3743	401, 402, 403, 404, 405
					3744	401, 402, 403
					3745	401, 402, 404
					3746	401, 402
					3747	403
					3748	401, 402, 403
	03	108.7178	108	30	3749	402
					3741	201, 202, 203, 204, 302, 303
					3742	201, 204, 302, 303
					3743	201, 202, 206, 303, 306
					3744	303
					3745	201, 204, 206, 302, 304, 305
					3747	202, 203, 302, 303
					3748	201, 203, 303
	04	115.1988	115	1	3749	201
					3745	107
합 계				78		

■ 면적현황

(단위: m²)

약식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공급면적			
102	102.7378	21.8520	124.5898	92.0868	216.6766	137.1787
102P	102.7378	21.8520	124.5898	92.0868	216.6766	137.1787
108	108.7178	23.0694	131.7872	97.4469	229.2341	145.1634
115	115.1988	24.3814	139.5802	103.2560	242.8362	153.8170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동별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5%)	중도금 (60%)						잔금 (35%)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10%	10%	10%	10%	10%	1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총분양가	계약시	2026.09.15.	2026.12.15.	2027.03.15.	2027.06.15.	2027.08.17.	2027.10.15.	입주시
102	3741,3742,3743, 3744,3745,3746, 3747,3748,3749	1층	23	294,016,502	705,439,544	70,543,954	1,070,000,000	53,500,000	107,000,000	107,000,000	107,000,000	107,000,000	107,000,000	107,000,000	374,500,000
102P	3741,3742,3743, 3744,3745,3746, 3747,3748,3749	4층	24	294,016,502	725,439,544	72,543,954	1,092,000,000	54,600,000	109,200,000	109,200,000	109,200,000	109,200,000	109,200,000	109,200,000	382,200,000
108	3741,3742,3743, 3744,3745,3746, 3747,3748,3749	2층	17	311,130,192	508,063,462	50,806,346	870,000,000	43,5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304,500,000
		3층	13	311,130,192	508,063,462	50,806,346	870,000,000	43,5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304,500,000
115	3745	1층	1	329,677,539	746,474,965	74,647,496	1,150,800,000	57,540,000	115,080,000	115,080,000	115,080,000	115,080,000	115,080,000	115,080,000	402,780,000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 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공급계약 체결시 별도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취득세, 인지세 및 기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실거주면적은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견본주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표시 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 및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계약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이하 버림방식 차이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반드시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소수점 이하의 면적변동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상기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 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및 지적확정 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2028년 2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약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입주금(잔금)	광주은행	1107-021-922881	코리아신탁(주)

※ 상기 지정계좌로 직접 무통장 입금[당첨 동·호수, 공급신청자(계약자) 성명으로 입금]하고 무통장입금증을 계약 시 지참하여 주십시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1403호 홍길동 → 1011403홍길동 / 101동 201호 홍길동 → 1010201홍길동’ 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분양대금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으며, 계약자는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분양대금 납입을 인정받지 못함에 있어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분양대금은 약정된 납부 일정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셔야 하며, 시행위탁사 겸 시공사는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해 드리지 않습니다.
- ※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계좌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발코니 확장 및 선택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시행위탁사 겸 시공사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분양대금을 위 지정계좌에 대한 계좌이체 또는 온라인 수납하며 이외에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건본주택에서 현장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점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점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공급계약은 효력이 상실, 해약 조치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계약금 입금 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대금 오납입에 따라 계약 미체결, 연체료 발생 등의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타입)	공급금액	계약금(20%)	잔금(80%)
		계약시	입주시
102	6,439,000	1,287,800	5,151,200
102P	6,109,000	1,221,800	4,887,200
108	4,037,000	807,400	3,229,600
115	7,582,000	1,516,400	6,065,600

※ 타입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계약 전 건본주택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비 (계약금, 잔금)	광주은행	1107-021-922897	코리아신탁(주)

-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금 후 입금증을 건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 주십시오. (건본주택에서는 직접 수납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점자와 다르거나 불분명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한 것은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닙니다.
- ※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위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건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착오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사 겸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010.02.18. 개정 시행)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공동주택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 공사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자재발주 문제로 인하여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자재의 제조사 및 모델은 품질, 품귀, 생산·공급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인지하여야 합니다.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이며,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발코니 외부에 창호가 설치되지 않는 등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의 형태, 위치, 규격, 사양, 색상, 열림(개폐)방향등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 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 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 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세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 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희통, 선희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희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상층세대 바닥 배관으로 인하여 천장 일부 구간에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확장 공사를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의 민원 발생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와 무관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은 입주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 준공이후 발코니 구조변경을 할 경우 개별세대로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득하여야 하고 사전허가 없이 불법구조 변경하여 확장하는 행위는 [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엄중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공사는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진행 예정이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공사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인지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수납장의 길이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십시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미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정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 이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1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 당첨자(예비입주자) 일정 및 장소

구분	서류 제출 일정	서류제출장소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제출	2026.06.12.(금) ~ 2026.06.13.(토) 2일간 10:00 ~ 17:00	• 「동탄 그웬 160」 견본주택 - 경기도 화성특례시 동탄구 영천동 863-5번지

※ 서류 접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변동 시 일정 재안내 드립니다.

※ 당첨자의 서류접수 일정 내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는 동일한 일정에 진행될 예정이며, 서류접수 기간내 방문하시어, 서류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			
공통 서류	○		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단,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불인정

	O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일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O		배우자 또는 세대원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본이 분리된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상기 등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과거 주소변동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개명 이력 포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O		배우자 또는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본이 분리된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초본 추가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배우자 또는 세대원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해당여부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재된 관계 불인정)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여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혼인하지 않은 단독세대의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사실 여부 증빙 위하여 제출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기록대조일 동일) 모두 제출
		O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배우자	• 당첨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O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서류(재직증명서 등),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 국내 거주 확인 위해 제출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 모두 제출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O		위임장	본인	•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요 / 접수장소에 비치
	O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부적격 통보률		O	해당 주택에 대한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항에 따른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받은 경우		소명자료		문구 포함분에 한하여 인정)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02.(화))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 등이 모두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등록표초본 대리인 발급 시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미포함하여 발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리인이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 반드시 과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요청하시기 바라며, 미표기 시 정확한 자격 확인을 위하여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 세대주 변경,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초본(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제출한 서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내용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6.06.15.(월) / 10:00 ~ 17:00	「동탄 그웬 160」 견본주택 - 경기도 화성특례시 동탄구 영천동 863-5번지

- ※ 서류 접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변동 시 일정 제안내 드립니다.
- ※ 당첨자(서류접수기간 내 서류제출 후 자격검증을 완료한 당첨자에 한함)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소명기간 내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세대주변경,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 대상	확인 및 유의사항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계좌이체확인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모바일 신분증 불가)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3통 제출 (발급기준: 본인 발급 / 발급용도: 주택공급 계약용 1통,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옵션) 계약용 각 1통)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 서류검수 시 1통을 제출한 경우 1통만 추가 제출
	O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하나, 대리인 계약 불가
	O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미제출 사유서 및 증빙서류 포함)		• 공동주택 공급대금,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함
		O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해당자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O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대리인 계약 시	O		본인 계약 시 서류 일체	계약자	※ 대리인 계약 시에는 본인 계약 시 구비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O		위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O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3통 제출 (발급기준 : 본인 발급 / 발급용도 : 주택공급 계약 위임용 1통,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옵션) 계약 위임용 각 1통)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불가, 인감증명서(본인발급)만 가능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 서류검수 시 1통을 제출한 경우 1통만 추가 제출(서류검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대리 계약하는 경우 2통 추가)
	O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모바일 신분증 불가)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O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대리인	• 대리인 개인정보수집(견본주택 비치)

※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 상기 제증명서류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합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해당 주택형의 계약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선정 진행 시 별도 연락 예정입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로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서류 참조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이체 한도 확인).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3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

■ 참고사항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동탄gwen160.co.kr>)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현황

구분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주체 겸 시행수탁자	코리아신타 (주)	110111-293783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대치동, 해성2빌딩10층)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	(주) 한토건설	110111-156875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여의도동, 대영빌딩 8층)

■ 공식 홈페이지 안내 : <https://www.동탄gwen160.co.kr>

■ 사업주체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화성특례시 동탄구 영천동 863-5번지, 동탄 그웬 160 견본주택

■ 분양 문의 : 1551-0727 (동탄 그웬 160 견본주택)